

순천시의회 공고 제2016-25호

「순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9월 30일

순 천 시 의 회 의



순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정취지

-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·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및 직업 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증진 도모

2. 주요내용

- 제1조, 제2조에는 목적 및 정의를 정하였음.
- 제3조부터 5조에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시장의 책무·우선구매대상을 정하였음.
- 제6조에 시장은 매년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음.
- 제7조에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하였음.
- 제8조에 구매촉진을 위해 순천시에 소재한 학교, 공공단체, 병원 등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게 하였음.
- 제9조에 시장은 중증장애생산품 생산 및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·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3. 입법예고 기간 : 2016. 10. 1. ~ 2016. 10. 5. (5일간)

4. 의견제출

-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16년 10월 5일까지 순천시의회(순천시의회의회장)에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전화 061-749-4958, 팩스 061-749-4773)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 · 반여부와 그 사유)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다. 그 밖의 참고사항 등

붙임 순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1부. 끝.

순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에 따라 지역 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중증장애인생산품”이란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.

제4조(책무) 순천시장(이하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5조(우선구매 대상기관)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시 본청, 사업소 및 직속기관, 의회
2. 시 산하 출연·출자 기관

제6조(우선구매 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2.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
3.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

③ 시장은 구매계획 수립시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7조(우선구매 촉진)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.

②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이 구매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.

제8조(구매 협조요청)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순천시에 소재한 학교, 공공단체, 병원 등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9조(포상)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·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17. 1. 1일부터 시행한다.